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로구의회 운영 위원회
전문 위원 정 성 수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 제안일자 : 2003년 9월 18일
- ☐ 제안자 : 남재경 의원 외 5인 발의

2. 위원회 회부

- ☐ 회부일자 : 2003년 9월 18일
 - ☐ 상정일자 : 2003년 9월 19일
- <제1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3. 개정 사유

- ☐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간사라는 명칭은 그 표현이 구시대적이고 또한 임무와는 어울리지 않은 표현이라는 지적에 따라
- ☐ 의원의 위상을 높이면서 의정활동을 행함에 있어 보다 자긍심과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 골자

- ☐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안 제12조)
- ☐ 다른 규칙의 개정(부칙)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48조 및 제58조의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

5. 검토의견

- ☐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위원회 명칭, 위원 정수, 소관사무, 임기, 소집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조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 ☐ 상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당해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의회 내부 운영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 ☐ 또한 조례상 간사의 임무는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어 "간사"보다는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이 직무와 더욱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됨

- ☐ 그러나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 정부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협의회에서는 간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또한 지방의회위원회 중에서도 강원도의회에서만 유일하게 2002년 7월 13일부터 조례개정으로 부위원장 명칭을 쓰기 시작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간사라는 명칭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 시 당분간은 명칭 사용에 다소의 혼란이 예상됨